「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O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1월 12일, 평창군수 제출

O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25일 회부

O 상정일자 : 제26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2020년 11월 2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1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교육 및 대상, 실시시기 및 통지(안 제4조~안 제5조)
- 교육장소 및 교재·시간 및 강사(안 제6조~안 제7조)
- O 수강료 및 강사료, 수료증 및 사후관리(안 제8조~안 제9조)
- O 권한의 위탁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O 본 조례안은

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를 근거하여 영업장의 위생적이며 안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.
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필수교육과 임의교육으로 교육대상자 구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시 시기, 장소와 교육교재 내용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강료 및 강사료, 수료증 및 사후관리 안 제10조에서는 권한의 위탁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- 관련 상위법인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교육실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였고, 또한, 같은법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준수사항 등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각 지자체 "조례로 위임"하도록 개정하였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.

검토결과 지자체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.

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음악산업진홍에 관한 법률」제11조 등에 따라 평창 군 주민들의 여가·취미생활, 모임·행사 등에서 쾌적하고 건전한 노래문화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영업장의 위생적이며 안전한 운영에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노래연습장업자"란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에게 법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고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의 지역에서 이를 영위하는 법인·개인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 범위) 노래연습장업자 교육(이하 "교육"이라 한다)에 관해서는 법 및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- 제4조(교육 및 대상)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과 관련되는 교육대상자(이하 "교육대상자"라 한다)를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이 경우, 법인의 교육대상자는 그 대표자 또는 담당임원으로 한다.
 - 1. 필수교육: 신규로 등록하려는 법인ㆍ개인

- 2. 임의교육: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업자
- 3. 그 밖의 교육: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래연습장업자
-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해당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거나 맡을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,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는 그종업원을 통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③ 군수는 군 외의 지역에서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업을 군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재지의 변경등록 등을 하려는 노래연습장업자가 해당 시·군·구의 교육이수 수료증(사본을 말한다)을 제출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- 제5조(실시 시기 및 통지) ① 교육은 신규로 등록을 받기 전이나 변경될 제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 교육대상자의 인원, 제2항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등록 또는 시행 후 빠른 기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.
 - ② 교육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월별·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하되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 7일 전까지 교육일시·장소 및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.
- **제6조(장소 및 대여사용)**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해당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.

- 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교육의 실시권한을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 시의 위탁운영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게 제1항의 시설을 갖추도록 해 야 한다.
-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군 소속 행정기관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군 소재 교육기관, 민간연수원·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대여(貸與) 받아 교육장소로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.
- 제7조(교재·시간 및 강사)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별로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. 이 경우, 제3항에 따른 해당 강사(이하 "강사"라 한다)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제4조제1항 각호의 교육별 해당 시간은 2시간의 범위로 한다. 이 경우,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내용은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 및 영 제9조 별표1에 따른다.
 - 1. 필수교육
 - 가. 준수사항 · 재난예방 및 관련 법규 해설
 - 나. 위생(친절·질서·청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 관련 사항
 - 2. 임의교육
 - 가. 제도변경 사항
 - 나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 - ③ 군수는 교육내용에 따라 필요한 강사에 관해서는 노래연습장업과 관련

되는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,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때마다 지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
- 제8조(수강료 및 강사료)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수 강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. 다만,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
 - ② 위촉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(이하 "강사료"라 한다)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.
- 제9조(수료증 및 사후관리) ① 군수는 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.
 - 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해당 교육이수자(성명, 주소, 연락번호 등을 포함한다)에 대한 명부를 작성·비치하고,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 간 보존·관리해야 한다.
 - ③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그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.
 - ④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해당 교육대상자의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⑤ 수탁자는 해당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지급명세서를 작성・비치해야 한다.
- 제10조(권한의 위탁) ① 군수는 교육을 직접 실시한다. 다만, 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한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16조제2항의 협회나 단체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한다.

-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교육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해당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연도 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- 1. 대상자 및 해당 대상자별 예상인원
- 2. 일시 및 장소
- 3. 내용 및 방법
- 4. 진행 및 강사확보 방안
- 5. 교육장소 대여료 및 강사료 지급 세부계획
- 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
-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실시할 경우마다 그 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와 교육실시에 관하여 서면으로 협의해야 한다.
- 제11조(준용) 수탁자에 관하여 이 조례서 정한 것 외의 선정절차·방법, 해당 위탁 기간 및 재위탁, 위탁 경비 보조 및 강사료 지급의 회계처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, 「평창군 예산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」등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